

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하안동 702번지 일원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2025년 제1회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4.29.) 심의(원안 수용)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8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,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8일
광 명 시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설	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광명시 하안동 702번지 일원	101,081.5	-

3. 사업시행예정일 :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

4. 계획인구 및 세대수 : 6,744인(2,810세대)

※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5. 사업시행자 지정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(대표: 김규철) ☎ 02-2112-6325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(역삼동, 카이트타워)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)

가. 행위제한 :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·합병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(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필요)

나. 건축물대장 제한 :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건축물대장의 전환(일반→집합) 및 집합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이 제한됨(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)

7. 지형도면 : 붙임 참고

붙임 : 정비구역 결정도

정비구역결정도

1:1500 지형도

37612015

